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학칙과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학협력단은 우리 대학교의 각종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개정 2015.1.13>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13>

1. 산학협력 사업 계약의 체결 및 관리
2.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결산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중소기업지원
7. 산업교육사업(계약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운영)
8. 제조업(방송물, 영상물, 공연물, 옥외광고물, 출판, 광고물)등에 관한 사업
9. 서비스업(교육서비스, 여행, 이벤트)등에 관한 사업
10. 부동산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
11. 건설업에 관한 사업
12. 영화제작 및 배급에 관한 사업
13.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업무

제4조(구성) ① 산학협력단에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둔다.<개정 2020.6.19.>

③ 산학협력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06.19.>

제5조(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에는 팀장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 체결
2. 협력단의 예·결산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력사업
4.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인력양성사업 지원
5. 산학협력 관련 업적관리와 실적 통계
6.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대학 소유 기술의 평가
7.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이전, 보상에 관한 업무
8.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업무
9.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
10.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디자인·인쇄·출판 업무

- 11. 협력연구소 활동에 대한 지원
- 12. 산학협력단 행정사무, 회계관리, 법률지원 업무
- 13. 운영위원회 지원
- 14. 협력단의 대외협력 업무
- 15.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 급여 및 복무에 관한 업무
- 16. 기타 산학협력단 관련 제반 사항 등

제6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조신설 2015.1.13>

제3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및 운영)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산학협력협의회

제8조(산학협력협의회) 산학협력단과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연구기관 등의 산학협력협의체를 통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보급·확산을 위하여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협의회(이하 “산학협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총장을 산학협력협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산학협력관련 지역기관장, 산업체대표, 연구기관장(이하 “임명직위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되, 임명직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산학협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 3. 산학협력업무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 5. 기타 산학협력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 ① 산학협력협의회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부의장이 되며, 의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계

제13조(회계처리기준)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정관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조신설 2015.1.13>

제14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3>

제15조(회계기관 지정) ① 회계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능력이 있는 부속연구기관 등을 분임회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계관리의 수입담당자와 지출담당자는 단장이 임명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3>

제16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조신설 2015.1.13>

제17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조신설 2015.1.13>

제6장 보칙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산학협력단의 제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제규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7.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조직도]

산학협력단 조직도

